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98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98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1532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영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앤리 담당변호사 이준범

판결선고 2022. 12. 29.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153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부속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권의 가액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사해행위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